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3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원택·김남희·박정현

김문수 · 이기헌 · 박 정

이병진 · 김남근 · 임호선

염태영 · 박홍근 · 송옥주

이용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 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 제2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제2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제3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제3조(「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촌융 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6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7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산림조합법」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시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한국마사회법」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	<u> 등</u>) ①
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	
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	
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	
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	
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3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	
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일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u>지 아니한 자</u>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3
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u>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이 없을 것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②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	
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1. 피성년후견인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	
<u>୍</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1. 2. (생략)
 -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없을 것
 - 4. 5. (생략)
 - ③ ④ (생 략)

- (현행과 같음)
- ② -----

- 1. 2. (현행과 같음)
-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4. 5.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농약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	
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농업협동조합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탈퇴) ① (생 략)	제29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	
퇴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파산한 경우</u>	<u><삭 제></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	
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	
용한다.	,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2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	
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	
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6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	2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u>다만,</u> 제1호에 해당	<u><단서 삭제></u>
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산림조합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생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히 탈퇴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하였을 때	<u><삭 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박 제></u>
아니한 사람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0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	
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	
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5조의5(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	2
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사람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	
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2. 인증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	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 3. ~ 11. (생략)
- ② ~ ④ (생 략)

-			
•			
	•		

- 1. (현행과 같음)
- 2. 공시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 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국마사회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생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